

청주지방법원 2022. 2. 17 선고 2021나51786(본소), 2021나51793(반소) 판결

[사해행위취소 · 손해배상(기)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충북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

담당변호사 김교형, 신인순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A

변 론 종 결 2021. 12. 16.

판 결 선 고 2022. 2. 17.

제1 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. 1. 15. 선고 2020가단30897(본소), 2020가단 8753(반소) 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모두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고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고 한다)에게

19,561,293원 및 그 중 19,271,453원에 대하여 2019. 12. 4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10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: 원고는 피고에게 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 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. 9. 13.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(피고는 원고와의 금융거래 이전인 2019. 2. 21. 제1심 공동피고였던 피고의 부모 B, C과 사이에 정당하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,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고, 제1심판결은 피고의 재산과 자금사정도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주장으로 구상금 청구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인데,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은 그 피고인 제1심 공동피고 B, C의 항소장이 2021. 3. 4. 각하되어 분리 확정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,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다.)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오태환, 판사 최유나, 판사 이성기